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보호 투자액 일정비율 이상 변동 시 사유 공시 등>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27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보호 투자액 일정비율 이상 변동 시 사유 공시 등(안 제13조 제1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1.

다. 회 부 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48% 가량 급증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도 307건에 달해 보안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 등은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기업 등의 실제 침해·유출사고와 조치내역, 정보보호·사고대응 역량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정보보호 투자액 일정비율 이상 변동 시 사유 공시 등(안 제13조 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1항 전단).
-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 정보보호 관련 인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및 조치 내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현황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 ----- -----

현행	개정안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 ----- ----- ----- 다음 각 호의----- ----- ----- ----- ----- ----- ----- ----- ----- ----- 1.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정보보호 관련 인증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 ⑤ (생략)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 사고의 발생 및 조치 내역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현황 ②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2024년 SK텔레콤의 정보기술부문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KT(6.4%)·LG유플러스(6.1%) 및 전체 정보보호 공시 기업 평균(6.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¹⁾.
-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은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²⁾에 대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1)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https://isds.kisa.or.kr/>) - 정보보호공시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2024.12., p.24, 29

2)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³⁾.

-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1회씩 ①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⁴⁾하고 있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3)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되는 정보보호 현황의 내용에 ① 침해사고의 발생 및 조치 내역, ②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을 추가하고 기존에 공시하던 정보보호 투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일정비율 이상 증감이 있으면 그 사유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공시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자는 보안사고 예방과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정보보호 투자액 변동 사유의 공시를 통해 사업자가 정보보호 투자 규모의 축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투자액 변동 사유의 구체적인 공시 수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보호 투자액의 변동 사유에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련 전략을 경쟁 기업이나 외부의 해커가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보호 투자액의 변동 사유의 구체성 수준에 따라 기업 내부의 보안정책 및 기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보호 투자액의 변동 사유 공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구체화할 때 기업 내부의 보안정책 및 기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액 변동 사유 공시를 의무화하면 정보보호 부문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추가 투자를 미루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별로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발생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안 위협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개 시점이 지연되는 등 정보의 적시성 관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투자액 변동 사유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증가 사유까지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 공시를 피하고자 정보보호 부문에 전략상 투자를 하지 않는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국내 감사, 공시 및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어 감사, 공시 및 회계 관련 국제 기준도 따라야 하는 글로벌 기업은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전체 투자액에서 국내 부문에 한정된 금액을 분리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액 변동 사유도 공시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